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3182(본소), 2018가합21787(반소) 판결
[매매물반환청구 ·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1459(본소), 2019나21466(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318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박홍식, 양병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용호, 윤석민

변론 종결2019. 9. 25.

판결 선고2019. 1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가공기를 인도하고,
나. 208,274,414원과 2019. 8. 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일 38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가공기를 인도하고, ② 222,854,400원과 2019. 8. 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일 38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16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46,101,5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가공기(이하 '이 사건 가공기'라 한다)를

910,800,000원1) 에 아래와 같이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중고인 2012년식 PS6020 4KW 레이저가공기(이하 '중고가공기'라 한다)를 341,000,000원2) 에 인수하되 그 대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2017. 1. 20., 잔금 559,800,000원3) 은 납품 완료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물품내역 및 금액)

물품명 : PS6025 DISK 6KW

계약금액 : 8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물품의 소유권)

1. 피고는 물품대금을 완불하였을 때 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피고가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물품대금이 약정기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입금되지 않을 때

제7조(손해배상)

피고는 제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 물품이 반환된 경우 물품 인도 후 반환 시까지 통상 사용료 및 물품 가치의 감소에 해당하는 손해액, 반환 시까지 소요되는 기타 제반 비용 일체의 합계금액

2.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제8조(위약금)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 각 조에 의거한 사항 또는 상관례상 타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20%를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특약사항)

3. 2012년식 PS6020 4KW는 원고가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수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5. 20.경

피고로부터 중고가공기를 인수함과 아울러 피고 사업장에 이 사건 가공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2017.

6. 12.부터 2017. 11. 28.까지 수차례 헤드부분의 온도상승 등으로 이 사건 가공기를 수리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지속적인 하자발생으로 수차례에 걸쳐 A/S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공기의 하자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8. 1.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아하 '피고의 해제통지'라 한다). 마. 반면,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원고의 해제통지'라 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해제통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해제통지 전에 이미 이 사건 가공기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다룬다. 이에 우선 원고와 피고의 해제통지의 각 효력에 관하여 시간순으로 검토한다.

(2) 피고의 해제통지의 효력 원고가 이 사건 가공기 설치 후 2017. 6. 12.부터 2017. 11. 28.까지 헤드부분의 온도상승 등으로 수차례 수리를 한 사실, 피고가 2018. 1. 4. 무렵 원고에게 'A/S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공기의 하자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① 2019. 4. 16. 감정 당시 이 사건 가공기 작동과정에서 헤드 하부의 온도가 20℃에서 53℃까지 상승하였고, 렌즈 세척 후 다시 테스트했을 때는 24℃에서 47℃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생산력 감소와 품질저하에 영향을 준다. ② 그리드는 소모품으로서 교체시기에 적절히 교체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가공기는 그리드의 제작이 일부 잘못되어 강제로 결합시켜 놓은 상태여서 사용자가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③ 집진기를 통하여 원활히 배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배기경로의 부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공기의 헤드부분은 독일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그 매뉴얼에 의하면 헤드내부 온도가 특정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기계작동이 멈추도록 한계값을 설정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헤드내부 포커싱 렌즈는 한계값 범위가 40℃~80℃, 표준설정값은 70℃이고, 콜리메이팅 렌즈는 한계값 범위가 40℃~100℃, 표준설정값은 100℃이며, 보호윈도우는 한계값 범위가 40℃~90℃, 표준설정값은 70℃인 사실, ③ 이 사건 가공기 헤드부분의 LED 램프에 관한 매뉴얼에 의하면, LED 램프의 녹색은 '동작 준비 완료'를, 오렌지색·적색은 '온도상승(40℃~70℃)'을 각 의미하고, 헤드 온도·보호윈도우의 온도가 70℃를 초과하여 상승할 경우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④ 감정인은 2019. 4. 16. 감정 당시 헤드 하부의 온도가 53℃ 또는 47℃까지 상승하였고 이러한 온도상승이 하자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매뉴얼에 의하면 작동과정에서 온도상승은 일반적 현상이고, 미리 설정된 한계값을 벗어나 온도가 상승하면 기계작동이 멈추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 내 온도상승을 하자로는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감정 당시 기계작동이 멈추지도 않은 점, ⑤ 감정인은 LED 램프의 녹색등이 켜질 때 '정상 가공(40℃ 이하)'이고, 온도가 40℃를 초과하여 오렌지색·적색등이 켜질 때는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파악하였으나, 이는 위 매뉴얼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판단오류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17. 11.경까지 헤드내부 렌즈 오염 및 온도상승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2017. 11.경 보완한 이후로는 헤드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위 감정 당시 헤드온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⑦ 무엇보다 피고는 피고의 해제통지 후에도 이 사건 가공기를 계속 사용한 점, ⑧ 그리드는 기계 작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고, 감정인도 두께를 수정하여 교체하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7. 11.말 수리 이후인 피고의 해제통지 당시 이 사건 가공기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해제통지의 효력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잔금 559,800,000원을 납품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7. 5. 20.경 이 사건 가공기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한 후 2017. 6. 12.부터 2017. 11. 28.까지 수리 등 AS조치를 통하여 헤드부분의 하자를 보완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공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그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 잔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입금하지 않을 때 원고는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을 위 조항에 따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9. 8. 13.자 준비서면이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시점은 납품 완료 및 수리를 완료한 후 1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5) (4) 소결론 (가) 원상회복청구 :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공기를 인도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청구 :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제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인도 후 반환 시까지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공기의 1일 사용료는 381,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2017. 12. 1.부터 2019. 8. 7.까지 사용료 중 원고가 구하는 222,854,400원6) 과 2019. 8. 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일 38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상당이다.

그런데 아래 3.의 다.(3)항에서 보듯이 위 222,854,400원 중 14,579,986원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8,274,414원7) 과 2019. 8. 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일 38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외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정한 위약금 165,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 각 조에 의거한 사항 또는 상관례상

타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20%를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조항이 취소뿐만 아니라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제8조는 그 문언에 비추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추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피고의 해제통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원고의 해제통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원상회복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중고가공기를 341,000,000원에 인수하되, 그 대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고가공기도 인수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351,000,000원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위 원상회복의무는 앞서 인정된 피고의 이 사건 가공기의 인도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¹⁰⁾ 피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위 대금에 대한 지급일부터 법정이자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7. 9.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가공기의 하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 16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가공기의 하자로 해제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물품대금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9. 7.경까지 원고에게 153,457,710원 상당 물품을 매도함과 아울러 원고로부터 123,956,149원 상당의 레이저가공기 소모품 등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차액인 29,501,561원¹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¹² 살피건대, 갑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스틸 플레이트 등을 매도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레이저가공기 소모품 등을 매수한 사실,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26. 기준 대금채무는 34,829,146원인 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22. 기준 대금채권은 20,249,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4,579,986원¹³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9. 8.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계 주장이 인정될 경우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¹⁴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208,274,414원¹⁵과 2019. 8. 8.부터 이 사건 가공기 인도완료일까지 일 38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창모

판사정종건

판사권민영

별지

1) = 828,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2) = 310,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3) = 910,800,000원 - 341,000,000원 - 1,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본소 청구취지 중 ①, ② 청구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인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 381,600원 × 584일(2017. 12. 1.부터 2019. 8. 7.까지는 615일임에도 원고는 그중 584일에 대하여만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7) = 222,854,400원 - 14,579,986원

8) 본소 청구취지 중 ③ 청구

9) = 1,000만 원 + 341,000,000원

10)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참조).

11) = 153,457,710원 - 123,956,149원

12) 다만, 피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그중 29,501,5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3) = 34,829,146원 - 20,249,160원

14) 8회 변론조서 참조

15) = 222,854,400원 - 14,579,986원